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 강화를 위한 노동정책실의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중대산업재해 관련 조사·수사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6개 과를 신설하면서 정원 6명(6급 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6명)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75명(6급 31명, 7급 44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6.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된 미조직근로자지원과의 분장 사무를 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에 설치한 직업건강증진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존에 직급 하향 조정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의 정원 163명(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의 정원 8급 87명, 9급 71명, 노동위원회 사무처·사무국의 정원 8급 4명,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의 정원 8급 1명)의 직급을 원직급으로 각각 상향 조정(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의 정원 7급 87명, 8급 71명, 노동위원회 사무처·사무국의 정원 7급 4명,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의 정원 7급 1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의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며(4급 또는 5급 2명),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의 정원 71명(5급 1명, 7급 20명, 9급 50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

(4급 또는 5급 1명, 6급 20명, 7급 50명)하고, 고용노동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5. 00. ~ 5.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0항제4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2제8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직장 내 성희롱 및 고용상 성차별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17.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우수기업의 선정·지원

제7조제6항 중 “노동개혁총괄과·공공노사관계과·노사협력정책과·노사관계법제과·노사관계지원과·근로기준정책과·근로감독기획과·퇴직연금복지”를 “노동개혁총괄과·공공노사관계과·미조직근로자지원과·노사협력정책과·노사관계법제과·노사관계지원과·근로기준정책과·근로감독기획과·퇴직연금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6항(종전의 제15항)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7항(종전의 제16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 미조직근로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조직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 미조직근로자 등의 지원 정책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조정
3. 미조직근로자 등의 지원 정책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4. 미조직근로자 등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5. 미조직근로자 등의 분쟁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미조직근로자 등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확산에 관한 사항
7. 미조직 근로자 등의 이해 대변 및 소통 지원에 관한 사항
8. 미조직근로자 등에 대한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9.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운영 지도
10.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한 적정 근로조건 보장정책의 수립 및 시행
11.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보호 정책 등의 수립

제8조제7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제9항제4호, 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제8조제11항제3호 중 “뇌심혈관계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을 “근골격계질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제10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안전보건개선계획 및 안전·보건진단에 관한 사항
1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에 관한 사항

제8조제15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6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유해작업 도급금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제14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별표 1의2에 따라 다음”으로 한다.

제15조제7항 중 “별표 1에 따른 지청의 관할 구역 사업장에 관한”을 “별표 1의2에 따라 다음”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관할하고, 제15조제7항과 관련하여 경기도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은 경기·성남·안양·안산·평택지청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를 “관할한다”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2호의 의정부지청의 과명란 중 “근로개선지도3과”를 “근로개선지도3과, 광역중대재해수사과”로 하고, 같은 호 성남지청의 과명란 중 “근로개선지도3과”를 “근로개선지도3과, 광역중대재해수사과”로 하며, 같은 호 창원지청의 과명란 중 “근로개선지도2과”를 “근로개선지도2과, 광역중대재해수사과”로 하고, 같은 호 포항지청의 과명란 중 “근로개선지도2과”를 “근로개선지도2과, 광역중대재해수사과”로 하며, 같은 호 전주지청의 과명란 중 “근로개선지도2과”를 “근로개선지도2과, 광역중대재해수사과”로 하고, 같은 호 천안지청의 과명란 중 “근로개선지도2과”를 “근로개선지도2과, 광역중대재해수사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623”을 “628”로 하고, 일반직 계 “617”을 “622”로 하며,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6”을 “37”로 하고, 행정사무관 “117”을 “119”로 하며, 행정주사 “65”를 “66”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61”을 “62”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640”을 “63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34”를 “624”로 하며,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6”을 “37”로 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0”을 “22”로 하며, 행정주사 “66”을 “52”로 하고, 행정주사보 “54”를 “55”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669”를 각각 “6,744”로 하고,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62”를 “68”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45”를 “265”로 하고,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시설주사 “53”을 “58”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27”을 “363”으로 하고, 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91”을 “99”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659”를 각각 “6,749”로 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0”을 “31”로 하며, 행정사무관 “118”을 “117”로 하고,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87”을 “193”으로 하며, 행정주사 “841”을 “856”으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161”을 “181”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43”을 “263”으로 하고,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시설주사 “53”을 “58”로 하며, 행정주사보 “1,003”을 “1,09

0”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475”를 “505”로 한다.

별표 11 중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30”을 “366”으로 하고, 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91”을 “99”로 하며, 행정서기 “492”를 “472”로 하고, 직업상담서기 “222”를 “226”으로 하며, 행정서기보 “203”을 “136”으로 하고, 직업상담서기보 “411”을 “407”로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 중 행정주사보 “1”을 “2”로 하고, “행정서기 1”를 삭제한다.

별표 18 제1호가목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노동정책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	5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2027년 3월 31일까지
---------------------	------------------------------------	----------------

별표 18 제2호나목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산업안전감독 (지방고용노동관서)	75명 (6급 31명, 7급 44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

제로 활용·운용하고 있는 별표 6의 정원 7명(행정주사 7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 정원 7명(행정주사보 7명)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된 직급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명, 별표 11의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 행정사무관 2명, 별표 11의 행정사무관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1의 정원 70명(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20명,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50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70명(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20명,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50명)으로 본다.

[별표 1의2]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관할구역

(제14조제13항 및 제15조제7항 관련)

1. 제14조제13항 각 호(다만, 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15조제7항 관련

명칭	관할구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서울강남지청 · 서울동부지청 · 서울서부지청 · 서울남부지청 · 서울북부지청 및 서울관악지청의 관할구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인천북부지청 및 부천시청의 관할구역
의정부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의정부지청 및 고양지청의 관할구역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경기지청 및 평택지청의 관할구역
성남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성남지청 · 안양지청 및 안산지청의 관할구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부산동부지청 · 부산북부지청 및 울산지청의 관할구역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창원지청 · 양산지청 · 진주지청 및 통영지청의 관할구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대구서부지청 및 구미지청의 관할구역
포항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포항지청 · 영주지청 및 안동지청의 관할구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목포지청 및 여수지청의 관할구역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제외한다)
전주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전주지청 · 익산지청 및 군산지청의 관할구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보령지청 및 서산출장소의 관할구역
천안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청주시청 · 천안지청 및 충주시청의 관할구역

2. 제14조제13항제7호 관련

명칭	관할구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서울강남지청 · 서울동부지청 · 서울서부지청 · 서울남부지청 · 서울북부지청 및 서울관악지청의 관할구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인천북부지청 · 부천시청 · 의정부지청 · 고양지청 · 강원지청 · 강릉지청 · 원주지청 · 태백지청 및 영월출장소의 관할구역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경기지청 · 성남지청 · 안양지청 · 안산지청 및 평택지청의 관할구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부산동부지청 · 부산북부지청 · 창원지청 · 울산지청 · 양산지청 · 진주지청 및 통영지청의 관할구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대구서부지청 · 포항지청 · 구미지청 · 영주지청 및 안동지청의 관할구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전주지청 · 익산지청 · 군산지청 · 목포지청 및 여수지청의 관할구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청주지청 · 천안지청 · 충주지청 · 보령지청 및 서산출장소의 관할구역

[별표 13]

노동위원회 사무처와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3항 단서 관련)

구 분	계	중앙노동 위원회	지방노동 위원회
총계	363	94	269
정무직 계	1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	1	1	
일반직 계	362	93	269
고위공무원단	1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위원장)	12		1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8	2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1
서기관	7	1	6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2	
행정사무관	49	28	21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 산사무관	3	2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1	
행정주사	134	28	106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1	
행정주사보	86	12	74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1	
행정서기	20	3	17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	1	
운전서기	1	1	
행정서기보	5	1	4
방호서기보	2		2
운전서기보	12	1	11
기록연구사	1	1	
사무운영서기보	10	2	8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⑨ (생략)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⑩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고용노동 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총괄</u>	<삭제>
5. ~ 8. (생략)	5. ~ 8. (현행과 같음)
9. <u>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우수기업의 선정·지원</u>	<삭제>
⑪ ~ ⑮ (생략)	⑪ ~ ⑮ (현행과 같음)
제6조의2(통합고용정책국) ① ~ ⑦ (생략)	제6조의2(통합고용정책국)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여성고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
1. ~ 15. (생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설>	16. <u>직장 내 성희롱 및 고용상 성차별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u>
<신설>	17. <u>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우수기업의 선정·지원</u>

⑨ ~ ⑫ (생략)

제7조(노동정책실) ① ~ ⑤ (생략)

⑥ 노동정책실에 노동개혁총괄과 · 공공노사관계과 · 노사협력정책과 · 노사관계법제과 · 노사관계지원과 · 근로기준정책과 · 근로감독기획과 · 퇴직연금복지과 및 고용차별개선과를 둔다.

⑦ ~ ⑨ (생략)

<신설>

⑨ ~ ⑫ (현행과 같음)

제7조(노동정책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노동개혁총괄과 · 공공노사관계과 · 미조직근로자지원과 · 노사협력정책과 · 노사관계법제과 · 노사관계지원과 · 근로기준정책과 · 근로감독기획과 · 퇴직연금복지-----.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 미조직근로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조직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 미조직근로자 등의 지원 정책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조정
3. 미조직근로자 등의 지원 정책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4. 미조직근로자 등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5. 미조직근로자 등의 분쟁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미조직근로자 등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확산에 관한 사항

	<u>7. 미조직 근로자 등의 이해 대 변 및 소통 지원에 관한 사항</u> <u>8. 미조직근로자 등에 대한 인 식 개선에 관한 사항</u> <u>9.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의 운영 지도</u> <u>10.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한 적정 근로조건 보장정책의 수 립 및 시행</u> <u>11.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다 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보호 정책 등의 수립</u>
<u>⑩ ~ ⑭ (생 략)</u> <u>⑮ 퇴직연금복지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u> 1. ~ 11. (생 략) <u>1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운 영 지도</u> 13.·14. (생 략) <u><16> 고용차별개선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7. (생 략) <u>8.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한 적정 근로조건 보장정책의 수 립 및 시행</u>	<u>⑪ ~ ⑮ (현행 제10항부터 제1 4항까지와 같음)</u> <u>⑯ -----</u> -----. 1. ~ 11. (현행과 같음) <u><삭 제></u> 13.·14. (현행과 같음) <u><17> -----</u> -----. 1. ~ 7. (현행과 같음) <u><삭 제></u>

9. <u>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보호 정책 등의 수립</u> 10. (생략) 제8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① ~ ⑥ (생략) ⑦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4. (생략) 15. <u>안전보건개선계획 및 안전·보건진단에 관한 사항</u> 16. (생략) ⑧ (생략) ⑨ 산업안전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u>유해작업 도급금지 및 승인에 관한 사항</u> 5. ~ 9. (생략) 10. <u>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에 관한 사항</u> 11. (생략) 12. <u>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 평가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u>	<u><삭 제></u> 10. (현행과 같음) 제8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 14. (현행과 같음) 15. <u>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 평가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u> 16.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⑨ ----- -----. 1.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5. ~ 9. (현행과 같음) <u><삭 제></u> 11. (현행과 같음) <u><삭 제></u>
--	--

13. (생 략)

⑩ 산업보건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 략)

<신 설>

14. (생 략)

⑪ 직업건강증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 략)

3. 뇌심혈관계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 등 작업 관련성 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4. 삭 제

5. ~ 12. (생 략)

⑫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 략)

9. 삭 제

<신 설>

<신 설>

10. (생 략)

⑬ · ⑭ (생 략)

⑮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은 다

13. (현행과 같음)

⑩ -----
-----.

1. ~ 13. (현행과 같음)

14.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15. (현행 제14호와 같음)

⑪ -----
-----.

1. · 2. (현행과 같음)

3. 근골격계질환 -----

5. ~ 12. (현행과 같음)

⑫ -----
-----.

1. ~ 8. (현행과 같음)

10. 안전보건개선계획 및 안전 · 보건진단에 관한 사항

1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에 관한 사항

12. (현행 제10호와 같음)

⑬ · ⑭ (현행과 같음)

⑮ -----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 략)

10.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

평가 및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11. (생 략)

<16> 화학사고예방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 략)

<신 설>

11. (생 략)

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① ~ ⑫ (생 략)

⑬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 제

2. ~ 7. (생 략)

⑭ ~ ⑯ (생 략)

제15조(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 ① ~ ⑥ (생 략)

⑦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은 제
14조제13항 각 호의 사항 중 별
표 1에 따른 지청의 관할 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

-----.

1. ~ 9. (현행과 같음)

<삭 제>

11. (현행과 같음)

-----.

1. ~ 10. (현행과 같음)

11. 유해작업 도급금지 및 승인
에 관한 사항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 별표
1의2에 따라 다음 -----
-----.

2. ~ 7. (현행과 같음)

⑭ ~ ⑯ (현행과 같음)

제15조(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별
표 1의2에 따라 다음 -----

다.

⑧·⑨ (생략)

고용노동부령 제324호 고용노동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
로 신설되는 직업건강증진팀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생략)

고용노동부령 제382호 고용노동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① ~ ④ (생략)

제5조(총액인건비제로 하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
용하고 있는 별표 11의 정원 15
8명(행정서기 87명, 행정서기보

--.

⑧·⑨ (현행과 같음)

고용노동부령 제324호 고용노동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2026년 6월 30일-----.

② (현행과 같음)

고용노동부령 제382호 고용노동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67명, 직업상담서기보 4명), 별표 13의 정원 4명(행정서기 4명), 별표 15의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은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1의 정원 158명(행정주사보 87명, 행정서기 67명, 직업상담서기 4명), 별표 13의 정원 4명(행정주사보 4명), 별표 15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1명)으로 본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5]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23</u>	<u>628</u>	+5
·	·	·	
·	·	·	
일반직 계	<u>617</u>	<u>622</u>	+5
·	·	·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36</u>	<u>37</u>	+1
·	·	·	
·	·	·	
행정사무관	<u>117</u>	<u>119</u>	+2
·	·	·	
·	·	·	
행정주사	<u>65</u>	<u>66</u>	+1
·	·	·	
·	·	·	
행정주사보	<u>61</u>	<u>62</u>	+1
·	·	·	
·	·	·	

[별표 6]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40</u>	<u>630</u>	-10
•	•	•	
•	•	•	
일반직 계	<u>634</u>	<u>624</u>	-10
•	•	•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36</u>	<u>37</u>	+1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20</u>	<u>22</u>	+2
•	•	•	
•	•	•	
행정주사	<u>66</u>	<u>52</u>	-14
•	•	•	
•	•	•	
행정주사보	<u>54</u>	<u>55</u>	+1
•	•	•	
•	•	•	

[별표 10]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

(제24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669</u>	<u>6,744</u>	+75
일반직 계	<u>6,669</u>	<u>6,744</u>	+75
·	·	·	
·	·	·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62</u>	<u>68</u>	+6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u>245</u>	<u>265</u>	+20
·	·	·	
·	·	·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시설주사	<u>53</u>	<u>58</u>	+5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보 건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327</u>	<u>363</u>	+36
·	·	·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91</u>	<u>99</u>	+8
·	·	·	
·	·	·	

[별표 11]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

(제24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659</u>	<u>6,749</u>	+90
일반직 계	<u>6,659</u>	<u>6,749</u>	+90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30</u>	<u>31</u>	+1
·	·	·	
·	·	·	
행정사무관	<u>118</u>	<u>117</u>	-1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187</u>	<u>193</u>	+6
·	·	·	
·	·	·	
행정주사	<u>841</u>	<u>856</u>	+15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u>161</u>	<u>181</u>	+20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u>243</u>	<u>263</u>	+20
·	·	·	

•	•	•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시설 주사	<u>53</u>	<u>58</u>	+5
•	•	•	
행정주사보	<u>1,003</u>	<u>1,090</u>	+87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 보	<u>475</u>	<u>505</u>	+30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 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330</u>	<u>366</u>	+36
•	•	•	
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91</u>	<u>99</u>	+8
•	•	•	
•	•	•	
행정서기	<u>492</u>	<u>472</u>	-20
•	•	•	
직업상담서기	<u>222</u>	<u>226</u>	+4
•	•	•	
•	•	•	

행정서기보	<u>203</u>	<u>136</u>	-67
•	•	•	
직업상담서기보	<u>411</u>	<u>407</u>	-4
•	•	•	
•	•	•	

[별표 15]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주사보	<u>1</u>	<u>2</u>	+1
·	·	·	
<u>행정서기</u>	<u>1</u>	<u><삭 제></u>	-1
·	·	·	